

수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683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C

2. D

변론 종결 2020. 4. 8.

판결 선고 2020. 4. 29.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20862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각 1/8 공유지분이 2017년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중 각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H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당심 계속 중인 2020. 2. 27. 이 법원에 피고 C 작성의 청구인낙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종친회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친회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종친회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종친회는 종중으로서 실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종친회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친회에 각 1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므로, 원고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낙 주장에 관하여

B이 피고 C의 위임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청구인낙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어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피고 C이 문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C이 진정한 의사로 위 청구인낙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B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위 청구인낙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¹⁾

앞서 인정한 사실들,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종친회가 원고들을 포함한 종원 13명을 상대로 하여 화성시 L 외 6필지 부동산이 위 각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373,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종친회가 종중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고 위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종친회에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종친회의 요구를 받고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선정자 K은 적극적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종친회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들도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종친회에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체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이 유발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종친회에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들이 유발한 착오로 이 사건 종친회에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종친회가 그 종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이 사건 보상금은 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 또는 종원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종친회 계좌로 송금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을 수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직접 수익한 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재윤, 판사 전호재, 판사 유성현

선 정 자 명 단

1. A

2. I

3. J

4. K

끝.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